
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- 설치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6조

「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- 설치년도: 2020년

- 설치목적: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'21년말 조성액	'22년도 운용현황			'22년말 조성액	'23년도 운용계획			비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-	37,854	-	37,854	38,898	71,134	38,898	32,237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6조에 따라 2020년 11월 「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음.
- 2022년 일반회계로부터 100억 원, 공기업특별회계 121억 원,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102억 원, 자활기금특별회계 20억 원,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원, 기반시설특별회계 0.3억 원,

주택사업특별회계 37억 원, 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원 을 예탁받아 총 38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.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계.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음.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

- 해당없음(재무활동으로만 이루어진 기금으로 평가 제외 대상)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-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21년	-	-	-
'22년	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8억 조성	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8억 조성	99%

-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

-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 ○ 「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○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적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유자금 예수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이자 상환 ○ 부족한 자원 충당, 대규모 사업 등 사업비에 활용 기반 마련 	상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

-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수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기금 설치 목적 달성도 우수함.

○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.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: 해당없음

《 감사 지적사항 등 》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'20년	해당없음	
	'21년	해당없음	
	'22년	해당없음	
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(권고조치)		해당없음	
기 타		해당없음	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: 해당없음

○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

《 기금 존치의 필요성 》

사 업 명	'23년 사업비 (단위: 백만원)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통합재정안정화기금	71,134	개별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창구 역할로서 존치 필요	상 중 하

4. 사업의 유사성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: 해당없음
-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: 해당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과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,
-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재원조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됨.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해당기금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개별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으로
-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의 기금사업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통합계정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음.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	'20년	'21년	'22년
수 입	합 계	%		37,854 100%
	예수금			37,681 99.5%
	이자수입			173 0.5%
지 출	합 계	%		37,854 100%
	예치금			37,854 100%

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- 설치근거: 「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 조례」
- 설치목적: 투자 및 이전기업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재원 마련
- 설치년도: 2019년 8월(조례제정일 2019. 1. 1. 조례 제1853호)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'21년말 조성액	'22년도 운용현황			'22년말 조성액	'23년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8,069	4,217	-	4,217	12,286	4,184	-	4,184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기금조성 목표액 200억원 달성을 위한 기금 적립(42억 원)
 - 투자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42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, 2022년 연도 말 기준 123억 원 조성
 - 2022년 예금금리 인상으로 단기 예금가입을 통한 자금 운용
- 2024년까지 기금을 적립하여 당초 기금 설립 목적에 맞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비와 2023년 착공 예정인 태백시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향후 활용하고자 함.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: 조성목표액 미달성

(단위: 백만원, %)

'21년도			'22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-	-	-	-	-	-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21년	○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한 기금 적립(40억 원)	○ 코로나 19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불확실성으로 기금 미적립	-
'22년	○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한 전입금 (40억원) 및 이자 적립 (1억원)	○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한 전입금(40억원) 및 이자 적립 (2억원)	100%

○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

- 2021년도는 코로나 19에 따른 재정여건의 불확실성과 재난지원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수요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당초 목표액 40억원을 적립하지 못하였으나,
- 2022년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0억원을 적립하여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 정상궤도 추진 중
 - 향후 2023년~2024년 기금 추가적립으로 2024년 조성 목표액 200억 달성 예정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설치운용조례	투자 및 이전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재원 마련	○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○산업단지 이전·유치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○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경비 ○기금의 운영·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	○조성목표액: 200억원 ○조성기간: 2019~2024년 ○2022년 연도말 조성액: 123억원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

- 투자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 확보함으로써 기업유치 전략적 대응

○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.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: 해당없음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: 해당없음

《 기금 존치의 필요성 》

사업명	'23년 사업비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	42억원	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,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지원정책금 마련을 통한 기업성장 및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 토대 필요	<u>상</u> 중 하

4. 사업의 유사성

○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

《 기금의 중복·유사성 현황 》

구 분	사업명	금액	비 고
해당 기금		해당없음	
일반·특별회계 예산사업		해당없음	
타 기금		해당없음	

○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: 해당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○ 기금조성 재원: 일반회계 전입금 및 발생이자

- 2019년~2022년 적립액: 전입금 120억원(조성목표액 200억의 60% 확보)
- 2023년 기금전출금(일반회계): 40억원 편성 완료
- 이자발생액: 3억원(*2022년 이자수입 2억원)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○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지원정책 발굴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재원확보로 기업 유치 적극 추진

- 지출수요 발생 시(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등)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조성 목표액 적립 전 우선 사용 적극 검토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	'20년		'21년		'22년	
수 입	합 계	8,017	%	8,069	%	12,286	%
	전입금					4,000	32.6%
	보조금						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8,000	99.8%	8,017	99.4%	8,069	65.7%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17	0.2%	52	0.6%	217	1.7%
	기타수입						
지 출	합 계	8,017	%	8,069	%	12,286	%
	비융자성사업비						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8,017	100%	8,069	100%	12,286	100%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기타지출						

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□ 기금설치 개요

- 설치근거: 노인복지법 제4조,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- 설치목적: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
- 설치년도: 1995년(조례제정 1995년 6월 17일 조례 제0892호)

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○ 기금사업의 목표

- 기금목표액 달성: 10억 원
- 기금용도

태백시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정한 사업 중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지원

기금의 사용 (조례 제6조)

1. 효,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
2.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
3.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
4.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
5.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
6.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
7. 각급 노인회(시지회, 동분회, 경로당)의 지도 육성
8.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
9. 태백노인회보 발간
10.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
○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

- 노인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용
-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활용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: 10백만 원

(단위: 백만원)

'21년말 조성액	'22년도 운용현황			'22년말 조성액	'23년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1,012	8	10	△2	1,009	32	20	12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2022년 태백시노인복지기금은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, 적정하게 집행되고 운영되었음.
 - 모범경로당 선정 및 시상 발표회(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): 4,400천원
 - 독거노인 일상생활 자립 역량강화(태백시 노인복지관): 3,600천원
 - 어른신대상 다도체험교육(태백시 노인복지센터): 2,000천원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: 백만원, %)

'21년도			'22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10	10	100%	10	10	100%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21년	○ 모범경로당 선정 등(46백만원, 12개팀) ○ 독거노인 생활 자립(5.4백만원, 10명)	○ 모범경로당 선정 등(46백만원, 12개팀) ○ 독거노인 생활 자립(5.4백만원, 10명)	100%
'22년	○ 모범경로당 선정 등(44백만원, 12개팀) ○ 독거노인 생활 자립(3.6백만원, 10명) ○ 다도체험교육(2백만원, 100명)	○ 모범경로당 선정 등(44백만원, 13개팀) ○ 독거노인 생활 자립(3.6백만원, 10명) ○ 다도체험교육(2백만원, 100명)	100%

○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

- 모범 경로당 선정, 생활 자립 기반 마련 등 사업을 통해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및 건강한 취미생활 증진으로 삶의 질 상승 등 노인 복리증진 효과가 있었음.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노인복지법 4조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	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	효, 예절등 전통문화선양 노인문제 연구 노인교육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복지증진 사항 등	사업목적 달성율 100%	

《 감사 지적사항 등 》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'20년	해당 사항 없음	
	'21년		
	'22년		
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(권고조치)			
기 타			

《 기금 존치의 필요성 》

사 업 명	'23년 사업비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① 노인복지 서비스지원사업	20,000	노인 복지증진	상
합 계	20,00		

4. 사업의 유사성

< 작성내용 >

○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

《 기금의 중복·유사성 현황 》

구 분	사업명	금액	비 고
해당 기금			
일반·특별회계 예산사업		해당 없음	
타 기금			

-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기금목표액(10억원) 기 달성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목표액(10억) 달성 완료에 따라 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속 추진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'20년		'21년		'22년	
수 입	합 계	1,025	100%	1,019	100%	1,020	100%
	전입금						
	보조금						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
	예탁금원금회수	1,006	98.2%	1,009	99.0%	1,012	99.3%
	예치금회수						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19	1.8%	10	0.9%	8	0.7%
	기타수입				0.1%		
지 출	합 계	1,025	100%	1,019	100%	1,020	100%
	비용자성사업비	16	1.3%	10	0.9%	10	0.9%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1,009	98.7%	1,009	99.1%	1,010	99.1%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기타지출						

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- 1) 기금명칭: 양성평등기금
- 2) 설치근거: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 11조
- 3) 설치목적: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
- 4) 설치년도: 2001년 10월 15일(조례개정 2022.12.30. 조례 제2085호)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'21년말 조성액	'22년도 운용현황			'22년말 조성액	'23년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1,072	12	15	△3	1,069	13	20	△7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,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태백시 여성의 복지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양성평등과 여성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 활동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·운영함
- 2017년 기금조성 목표액(10억원) 달성하였으며, 2018년부터는 매년 기금조성 이자증식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14개 사업, 69백만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, 올해도 20백만원으로 공모사업을 추진 중으로 양성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.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: 백만원, %)

'21년도			'22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20	9	45	20	15	75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21년	○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(20백만원)	○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(9백만원) - 2개 단체 2개 사업	45%
'22년	○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(20백만원)	○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(15백만원) - 3개 단체 3개 사업	75%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	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	1.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.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지원 3.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사업 지원 4. 그 밖에 양성평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	기금조성액 10억 원 달성 100%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

- 2001년 조례제정 당시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정하여, 매년 일반회계 5천만 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음.
- 2017년 10억 원을 목표달성으로 2018년에는 기금조성 이자증식 금액으로 3개 단체 선정 3개 사업에 13백만원 기금사업을 추진함.
- 2019년에는 소통의 리더쉽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교육, 태백시 가정 폭력 실태조사 분석 자료집 제작, 다문화 시대에 함께하는 양성평등 이야기 등 3개 사업에 15백만원 지원함.
- 2020년에는 결혼이민자 양성평등 한국어 익히기 교육, 여성리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, 태백시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3개 사업에 16백만원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권의 증진에 기여하였음.
- 2021년에는 여성1인가구·점포 안심 홈세트 지원사업,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이야기 등 3개 사업에 9백만원을 지원하여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도성에 기여하였음.
- 2022년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겪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위로하며 치유하기 위한 닥종이 인형작품 체험 프로젝트 “기억-치유하다”, 결혼이민자 양성평등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 학습지원,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15백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여성 인권에 대한 시민 의식 증진에 기여하였음.

○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.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: 해당 없음

4. 사업의 유사성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

《 기금의 중복·유사성 현황 》

구 분	사업명	금액	비 고
해당 기금	해당 없음		
일반·특별회계 예산사업	해당 없음		
타 기금	해당 없음		

-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: 해당 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자치단체 출연금: 2001년 조례 제정 이후, 2017년까지 매년 50백만원 기금조성액 지원 / 목적사업 적합 / 2018년부터는 기금이자 증식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음.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기금 이자율 감소로 향후 예금이자 자산증식 방식으로는 사업금액의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실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.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'20년		'21년		'22년	
수 입	합 계	1,084	%	1,081	%	1,084	%
	전입금						
	보조금						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1,063	98.1%	1,067	98.7%	1,072	98.9%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20	1.9%	14	1.3%	12	1.1%
	기타수입						
지 출	합 계	1,084	%	1,081	%	1,084	%
	비용자성사업비	17	1.5%	9	0.8%	15	1.4%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1,067	98.5%	1,072	99.2%	1,069	98.6%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기타지출						

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- (1) 설치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9조,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
- (2) 설치목적: 장애인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지원
- (3) 설치년도: 2004년(조례제정 2004. 11. 18. 조례 제1269호)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'21년말 조성액	'22년도 운용현황			'22년말 조성액	'23년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1,037	7	12	△5	1,032	15	15	-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장애인복지법 제9조, 제53조의 규정 및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태백시 관내 거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·운영함.
- 21년도 출연 50백만원, 이자 12백만원을 적립하여 1,037백만원이 조성되었으며
- 22년도 목표액 10억 조성하였으며 기금운영을 통하여 22년 5개 사업 12백만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, 올해도 15백만원으로 공모사업을 추진 중으로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사업 추진 및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.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: 백만원, %)

'21년도			'22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	해당없음		12	12	100%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21년	해당없음	해당없음	
'22년	고유 목적 사업 운용	- 5개 단체 5개사업(12,000천원)	100%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	1. 등록된 장애인단체 육성 2.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상담 세미나 등 행사 3.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4. 장애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 작업장 운영 5. 장애인 교육 및 연수 6.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	기금조성액 10억 원 달성 100%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

- 2021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10억 원 조성하였음.
- 2022년 기금조성 이자증식 금액으로 5개 단체 선정 12백만원 기금 사업을 추진함.

○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.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: 해당 없음

《 감사 지적사항 등 》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 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'20년	해당없음	
	'21년	해당없음	
	'22년	해당없음	
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(권고조치)		해당없음	
기 타		해당없음	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: 해당없음

○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(예: 신축적 집행, 적립성, 안정성 등)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: 해당없음

4. 사업의 유사성

○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

《 기금의 중복·유사성 현황 》

구 분	사업명	금액	비 고
해당 기금		해당없음	
일반·특별회계 예산사업		해당없음	
타 기금		해당없음	

-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: 해당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기금조성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으며,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음.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예금이자 자산증식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내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'20년		'21년		'22년	
수 입	합 계	974	100%	1,037	100%	1,045	100%
	전입금	50	5.1%	50	4.8%	-	-
	보조금	-	-	-	-	-	-
	차입금	-	-	-	-	-	-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-	-	-	-	-	-
	예탁금원금회수	-	-	-	-	-	-
	예치금회수	907	93.1%	974	94%	1,037	99.2%
	예수금	-	-	-	-	-	-
	이자수입	17	1.8%	13	1.2%	8	0.8%
	기타수입	-	-	-	-	-	-
지 출	합 계	974	100%	1,037	100%	1,045	100%
	비용자성사업비	-	-	-	-	12	1.1%
	융자성사업비	-	-	-	-	-	-
	인력운영비	-	-	-	-	-	-
	기본경비	-	-	-	-	-	-
	예탁금	-	-	-	-	-	-
	예치금	974	100%	1,037	100%	1,033	98.9%
	차입금 원리금상환	-	-	-	-	-	-
	예수금 원리금상환	-	-	-	-	-	-
	기타지출	-	-	-	-	-	-

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구 분	내 용
설치년도	2004년
근거법령	식품위생법 제89조,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'21년말 조성액	'22년도 운용현황			'22년말 조성액	'23년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139	4		4	143	12	0	12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2021년 말 조성액 139백만원, 2022년 과징금 2.7백만원, 이자수입 1.3백만원 조성으로 총 143백만원 정기에치 완료하여 조성목표 대비 100%이상 달성
- 식품위생법 제89조, 태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시민 영양수준 향상 및 선진음식문화 육성을 위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조성.운용하였으며 향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,381개소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기금보유 권고안에 근거하여 500백만원 예치를 목표로 기금 조성에 주력 하고자함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: 백만원, %)

'21년도			'22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30	26	86%	-	-	-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21년	코로나 19 대응 사업	코로나19 대응 사업	86%
'22년	없음	없음	-

○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

- 식품위생법 제 89조에 의거 하여 기금을 조성.운용하고 있으며, 보건 복지부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기금보유 권고안에 근거하면서 100백만원 이상 예치 시 자체 수입액의 50%범위내 에서 사용토록 함.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위생법 제89조 - 태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 - 선진음식문화 형성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용자 및 모범음식점 육성 지원사업 2.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, 식중독 예방사업 3.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, 홍보사업,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사업 등 4.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예방사업

○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

- 2002년 조례 제정 시 100백만원 이상 기금조성액을 목표로 식품위생법 위반 징수과징금 및 정기예탁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매년 기금을 조성, 2014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기준 적립목표액 100% 이상 달성.

○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.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

《 감사 지적사항 등 》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 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'20년	없음	
	'21년	없음	
	'22년	없음	
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(권고조치)		없음	
기 타		없음	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: 해당없음

○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: 해당없음

《 기금 존치의 필요성 》

사 업 명	'23년 사업비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태백시 식품진흥기금	-	시민 영양수준 향상 및 선진음식 문화 육성	상

4. 사업의 유사성

○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.유사 사업현황: 해당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식품진흥기금 운용목적은 식품안전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.운용되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반자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납부액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음.

2021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방역 대응 지원사업 추진 후, 예치금 적립을 목표로 운용.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는 필요하며 2023년 목표 500백만원 이상의 적립목표액 대비 현재 기금조성액 26% 달성 되었으므로 기금 조성에 주력하고 향후 재원충당 여부에 따라 세부사업 및 목표를 별도로 수립, 지속추진 예정.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구 분		‘20년		‘21년		‘22년	
수 입	합 계	161	100%	165	100%	143	100%
	전입금						
	보조금						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144	89%	162	98%	139	97%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2	1%	1	1%	1.3	1%
	기타수입	15	10%	2	1%	2.7	2%
지 출	합 계	161	100%	165	100%	143	100%
	비용자성사업비			26	16%		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161	100%	138	84%	143	100%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기타지출						

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- 설치근거
 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
 -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
- 설치 및 조성 목적
 - 재난관리에 소요비용 충당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
- 설치연도
 - 재해대책기금: 1997. 10. 8.(조례제정일 1997. 1. 9. 조례 제964호)
 - 재난관리기금: 1998. 11. 23.(조례제정일 1998. 11. 23. 조례 제1136호)
 - 재난관리기금통합: 2005. 1. 11.(재해대책기금, 재난관리기금 통합)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'21년말 조성액	'22년도 운용현황			'22년말 조성액	'23년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1,390	225	93	132	1,523	242	162	80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의무적립금을 매년 적립(최근 3년간 보통세의 1%)하여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자주 재원 확보로 기금 설립의 당초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

-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주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체계 구축
 - 코로나19관련 물품구매(마스크, 5,500천원)
- 각종 자연재난 대비 긴급공사, 사전예방시설 설치
 - 폭염대비 저감 시설 설치(미스트폴, 52,000천원)
 - 지방하천 유지보수 공사(34,694천원)
-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부합하게 집행하고, 예산규모에 맞는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이외의 기금은 이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 함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: 백만원, %)

'21년도			'22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280	206	74%	205	93	45%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2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(100백만원) ○ 재난재해예방 및 위험시설물 정비(100백만원) ○ 소상공인대출이자차보전(5백만원) ○ 재난재해예방물품 구입(80백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(54백만원) ○ 마스크 및 체온계 구입(42백만원) ○ 재난위험시설 정비공사(86백만원) ○ 소상공인대출이자차보전(1백만원) ○ 사회복지시설방역물품(18백만원) ○ 열화상카메라 구입(5백만원) ○ 체온계 구입(1백만원) 	74%

<u>'22년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(50백만원) ○ 소상공인대출이자차보전(5백만원) ○ 재난재해예방 및 위험시설물 정비(100백만원) ○ 재난재해예방물품구입(50백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관련 마스크구입(5.5백만원) ○ 소상공인대출이자차보전(320천원) ○ 폭염저감 물품구입(52백만원) ○ 지방하천 유지보수공사(35백만원) 	45%
-------------	--	---	-----

○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

- 2021년 7개 사업에 206백만원 집행, 2022년은 4개사업에 93백만원을 집행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예산규모에 맞게 사용하였으며. 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.태백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재난의 예방과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「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의 보수·보강 등 .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른 감염병 지역 내 확산방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재난재해 예방 및 감염병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어 재난관리기금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.지방하천시설 유지 보수 실시로 재난에 대비 사전예방

○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·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《 감사 지적사항 등 》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 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<u>'20년</u>	해당없음	
	<u>'21년</u>	해당없음	
	<u>'22년</u>	해당없음	
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(권고조치)		해당없음	
기 타		해당없음	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: 해당없음

○ 《 기금 존치의 필요성 》

사 업 명	'23년 사업비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① 재난발생응급조치 및 긴급대응	10백만원	각종 재난발생 대비 긴급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	상
② 소상공인대출이자 이차보전	2백만원	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전	상
③ 재난재해예방 및 위험시설물 정비	140백만원	재난재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방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	상
④ 재난재해예방 물품구입	10백만원	감염병 지역사회 확산방지	상
합 계	162백만원		

4. 사업의 유사성

○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: 현황없음

○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: 해당없음

《 기금의 중복·유사성 현황 》

구 분	사업명	금액	비 고
해당 기금	해당없음		
일반·특별회계예산사업	해당없음		
타 기금	해당없음		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○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액평균의 1%를 적립하고 있으며, 최저적립액 중 15% 이상을 예치(의무예치)하고 있어, 재원조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○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구 분		'20년		'21년		'22년	
수 입	합 계	1,977	100%	1,598	100%	1,615	100%
	전입금	212	10.7%	212	13.3	212	13.1
	보조금						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1,731	87.5%	1,370	85.7%	1,390	86.1%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34	1.8%	16	1%	13	0.8%
	기타수입						
지 출	합 계	1,977	100%	1,598	100%	1,615	100%
	비용자성사업비	607	30.7%	206	12.9%	93	5.7%
	융자성사업비			1	0.1%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1,370	69.3%	1,390	87%	1,523	94.3%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기타지출						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재난관리기금은 유사 시 발생할 재난재해에 대비하고,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사업비로,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예정
-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재해 발생에 사전 대비할 계획임

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'21년말 조성액	'22년도 운용현황			'22년말 조성액	'23년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626	72	91	▽19	608	59	46	△13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○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2 에 따른 기금설치로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였고,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기존 광고판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함.

- 저단 현수막 게시대 설치, 도시브랜드 광고판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선 8기 시정구호 정비,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등 시행 (가급적 계량수치)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 계획 집행실적

(단위: 백만원, %)

'21년도			'22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100	0	0	91	91	100

※ 21년도 예산 22년도 집행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21년	○ 신규 현수막 게시대 설치 100,000,000원(예산)	○ 관내 현수막 게시대 제작 43,410,450원	43%
'22년	○ 신규현수막 게시대 설치 91,000,000원(예산)	○ 관내 현수막 게시대 제작 및 정비 90,683,000원	100%

○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

-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	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	· 경관개선 · 현수막게시대 신설 ·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	· 목표금액 달성- 광고물 정비 사업 추진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

-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후 사용계획 추진

○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.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

- 해당사항 없음.

《 기금 존치의 필요성 》

사업명	'23년 사업비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①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	40	불법현수막 방지	상
합 계	40		상

4. 사업의 유사성

< 작성내용 >

《 기금의 중복·유사성 현황 》

구 분	사업명	금액	비 고
해당 기금	“해당없음”		
일반·특별회계 예산사업	“해당없음”		
타 기금	“해당없음”		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매년 5천만 원 기금 조성액지원/목적사업 적합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기금 목표액인 5억원 달성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각종 옥외광고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개최 후 사용 용도 결정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'20년		'21년		'22년	
수 입	합 계	587	100%	626	100%	698	100%
	전입금					15	2.1%
	보조금						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542	92%	587	93.8%	626	89.7%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12	2%	3	0.5%		
	기타수입	32	6%	36	5.8%	57	8.2%
지 출	합 계	587	100%	583	100%	698	100%
	비용자성사업비					91	13%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587	100%	583	100%	608	87%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기타지출						

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- 설치근거: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
- 운용목적: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
- 설치연도: 2009. 11. 13. 조례 제정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'21년말 조성액	'22년도 운용현황			'22년말 조성액	'23년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3.0	54.0	56.5	-2.5	0.5	60.0	60.0	0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2022년 기금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비 교부대비 85%를 지출하였음.
- 지출 세부목록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 서류 누락은 없었고 기금통장 내 기금 외 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기금운용 관리가 우수하였음.
- 각종 사업의 지출 시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하였음.
- 전기사용요금, 상하수도 요금, 통신요금 지원 등 교부 확정된 금액 내에서 지출.
- 향후 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의 기금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은 물론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연초 빠른 교부를 통한 조기 사업 추진.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: 백만원, %)

'21년도			'22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76.9	67.4	88	56.5	48.3	85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21년	○ 주거환경개선, 의료비 등 복리 증진 사업(30백만원, 7가구) ○ 난방비 지원 사업(46백만원, 7가구)	○ 주거환경개선, 의료비 등 복리 증진 사업(21백만원, 7가구) ○ 난방비 지원 사업(46백만원, 7가구)	88%
'22년	○ 농사용 자재, 의료비 등 복리 증진 사업(12백만원, 7가구) ○ 난방비 지원 사업(44백만원, 7가구)	○ 농사용 자재, 의료비 등 복리 증진 사업(4백만원, 7가구) ○ 난방비 지원 사업(44백만원)	85%

○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

- 목적 외 사용 및 지출 건수 전무로 기금운용 관리 우수
- 지출 증빙서류 관리 우수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-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원 등에 관한 조례	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지원	- 주변영향지역 주민소득증대사업 -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사업 - 주변영향지역 주민육영사업	100%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

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가구별 지원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 설치목적은 충실히 수행

○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.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

《 감사 지적사항 등 》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 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'20년	- 지적사항 없음	강 원 도 종합감사
	'21년	- 지적사항 없음	
	'22년	- 지적사항 없음	
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(권고조치)		- 지적사항 없음	
기 타			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: 해당 없음

○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(예: 신축적 집행, 적립성, 안정성 등)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

《 기금 존치의 필요성 》

사 업 명	'23년 사업비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		해당사항 없음	
합 계			

4. 사업의 유사성: 해당 없음

○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

《 기금의 중복·유사성 현황 》

구 분	사업명	금액	비 고
해당 기금		“해당 없음”	
일반·특별회계 예산사업			
타 기금			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폐기물처리시설(소각시설) 반입수수료의 10%에 해당하는 기금을 매년 조성
 -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원치 아니할 경우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함에 따라 재원조성 지속 존치
 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존치 시까지 기금의 지속적으로 유지 지원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: 천원)

구 분		'20년		'21년		'22년	
수 입	합 계	131	%	80	%	57	%
	전입금	51	38%	46	58%	45	78%
	보조금						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72	55%	31	39%	3	5%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					
	기타수입	9	7%	3	3%	10	17%
지 출	합 계	131	%	80	%	57	%
	비용자성사업비	100	76%	77	96%	57	99%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31	24%	3	4%	1	1%
	차입금						
	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						
원리금상환							
기타지출							

※ 비율(%)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(예: 전입금/합계)

농업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-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2003. 12. 30. 조례1242호)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'21년말 조성액	'22년도 운용현황			'22년말 조성액	'23년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5,165	500	88	412	5,577	586	-	586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2003년 기금을 조성하여, 시작하여 2019년 2,150백만원을 적립함으로써 5,000백만원을 초과하였고, 조례개정(2020. 12. 29.)을 통하여 목표액을 10,000백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22년에는 5,615백만원 적립하였음.
- 조례 제5조(기금의 운용) ④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25억원을 초과하여 2022년에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50백만원 사용하였음.
- 기금 설치 목적은 농업, 농촌발전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5억 원 이상 기금 조성 후 사용 가능하며 총 적립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출연을 통한 적립 및 이자수익금을 활용하여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: 백만원, %)

'21년도			'22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100	0	0	100	88	88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21년	•지출: 100백만원 (무사마귀 방제 약제 지원)	•지출: 0백만원	0%
'22년	•지출: 100백만원 (유기질비료지원사업)	•지출: 88백만원	88%

○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

-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25억 원 이상의 기금 조성 후 제12조 제1항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가능하나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, 동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1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·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, 농업인 지원을 위해 존치 필요함

※ 제5조(기금의 운용) 제4항 :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목적사업은 25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.

※ 제12조(용자지원)

① 용자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.

② 기금의 원금으로 용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 육성사업
2.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의 농림시설 및 축사복구사업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※ 제3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
2. 농업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
3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

② 태백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5억원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·관리한다.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태백시 농업발전기금설 치 및 운용 조례 (제정2003.12.20)	농업,농촌 발전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기금조성 목표액 : 100억 원 ※ 기금운용 25억 원 이상 조성한 후 시행 가능 •주요 사업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증대 지역특화 육성사업 - 농업재해의 농림시설 및 축사 복구 사업 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2년 말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치금 4,750백만 원 - 이자수입액 865백만 원 - 총 적립액 5,615백만 원 ※ 목표 대비 56% 기금 조성 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

- 2003년 조례 제정 당시 기금 조성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정하고 2004년부터 매년 5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왔으나 전체적인 시 재정 사정상 2007년부터는 2018년까지 매년 50백만 원씩 시 출연금을 조성하여 오고 있었으나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9년 2,150백만 원을 적립하였음.
- 2020년말 기준 기금 존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면서 기금 조성 목표액을 100억으로 상향하였음
- 2021년 지력증진을 위한 무사마귀방제 약제 지원사업을 계획했지만 사업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음
- 2022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진행하여 88백만원 집행하였음
- 2022년말 기준 시출연금은 총 4,750백만 원, 이자 수입액은 865백만 원으로 총 적립액은 5,615백만 원으로서 100억 원 목표의 56%의 기금을 조성함.

○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.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: 해당없음

《 감사 지적사항 등 》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 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'20년	해당없음	
	'21년	해당없음	
	'22년	해당없음	
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(권고조치)		해당없음	
기 타		해당없음	

-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
-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(예: 신축적 집행, 적립성, 안정성 등)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: 해당없음

《 기금 존치의 필요성 》

사 업 명	'22년 사업비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유기질비료지원사업	88백만원	농업분야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불가피	상
합 계	88백만원		

4. 사업의 유사성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

《 기금의 중복·유사성 현황 》

구 분	사업명	금액	비 고
해당 기금			중복 사전 배제

-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
- 특별한 지적사항 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2021년말까지 기금 자체재원으로 4,250백만원 조성과 이자 수입 914백만원으로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하였고 추후 이자 수입 및 시 출연금으로 10,000백만원 목표로 사업 추진
- 기금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농업 및 농촌의 지속 발전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며 적립 목표액은 100억 원 달성 기준에 의거하여 지속 적립, 기금 조성액이 25억 원 이상이 되어 사업을 다양화하여 추진하되, 세부사업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함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	'20년		'21년		'22년	
수 입	합 계	5,112	%	5,165	%	5,615	
	전입금	-	-	-	-	500	8.9%
	보조금	-	-	-	-		
	차입금	-	-	-	-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-	-	-	-		
	예탁금원금회수	-	-	-	-		
	예치금회수	5,052	98.8%	5,112	98.9%	5,115	91.1%
	예수금	-	-	-	-		
	이자수입	60	0.12%	53	0.11%		
	기타수입	-	-	-	-		
지 출	합 계	5,112	%	5,165	%	5,615	%
	비용자성사업비	-	-	-	-	88	1.56%
	융자성사업비	-	-	-	-		
	인력운영비	-	-	-	-		
	기본경비	-	-	-	-		
	예탁금	-	-	-	-		
	예치금	5,112	100%	5,165	100%	5,527	98.44%
	차입금 원리금상환	-	-	-	-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-	-	-	-		
	기타지출	-	-	-	-		